

기독교사회윤리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“기독교사회윤리연구소”(Christian Social-ethic Institute)라 칭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 하여 회원 상호간의 연구를 공유하며, 국내.외 관련 학계와의 학문 교류에 힘쓰므로 한국교회의 목회, 선교와 신학, 특히 기독교사회윤리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, 기독교사회윤리학 발전에 유익한 논문 등의 수집과 발간 사업 (본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와 국·내외 미발표된 논문들을 발굴 출판 및 학술지 발행, 각 대학(원)의 기독교사회윤리학 교과서, 참고도서, 기타교재 편찬 사업)
2.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, 디아코니아, 기독교사회윤리학 발전에 유익한 논문 등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, 홈페이지를 통한 구축
3. 일반 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각 학문적 연구 수행
4. 사이버 연구소 설립을 통한 정보의 교류
5. 한국 기독교계 네트워크 및 교류
6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
7. 디아코니아의 국제화 노력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기구)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은 운영 위원회를 둔다.

제5조 (임직원)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1인
2. 자문위원 약간 명
3. 연구위원 약간 명
4. 전임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 약간 명
5. 간사 1인
6. 조교 약간 명

제6조 (자격 및 임명)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간사와 조교는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위원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중 소장이 위촉한다.

④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.

제7조 (임기)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

제8조 (직무)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산하에 있는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한다.

② 연구원은 주어진 연구를 수행한다.

③ 간사와 조교는 소장과 실장의 지휘 하에 연구실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

제9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소장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.

제10조 (임명)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 (의결)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 (연구위원회) ① 기독교사회윤리학의 연구와 출판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한다.

② 연구위원은 교수와 교계 인사 중에서 6명 이내로 하며, 운영위원 회의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.

④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『교회와 사회』, 신학, 목회, 선교 전문 서적 등의 편집을 담당한다.

⑤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심사위원을 겸한다.

제13조 (의결) 제반 결정 사항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4 장 회 원

제14조 (자격) 본 연구소의 회원은 서울신학대학교 또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각 대학원을 졸업 한 기독교신학분야에서 석사이상 또는 목사, 선교사(준회원) 그리고 박사이상(정회원)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공감하고, 회칙을 준수하며 본 연구소의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집회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, 협력하기를 원하는 자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15조 (권리)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투고와 학술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

제16조 (회원의 종류) 본 연구소의 회원은 개인회원(교회, 선교단체 등)으로 하며,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
제17조 (회원의 제명)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보통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 회원의 제명통고가 본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제명일로 한다.

- ① 본 연구소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회원
- ② 본 연구소의 정해진 연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
- ③ 서면 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회원

제 5 장 재 정

제18조 (재원) 본 연구소와 연구실의 수입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서울신학대학 연구 지원비
2. 외부의 연구 지원비
3. 회비
4. 연구기금
5. 기타

제19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20조 (승인)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,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- ① (규약의 개정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- ②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- ③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